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32호 2018. 4. 30.(월)

훈 령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9

기 타

○ 시정알림판 ----- 11

회람							
----	--	--	--	--	--	--	--

목포시 훈령 제810호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 4. 30.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5조의2(정보시스템접근권한 부여) 제1항, 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해당부서장은 공무원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담당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범위 및 기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조(휴직) 제1항제1호, 제3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시장은 공무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30일 이상 공무원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56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41조 1항 4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직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원	환 미 화 경 원
		소 계	행 보	정 조	시 장 유	설 비 지	현 지 점	장 도 검	
계	519	339	256	54	29	14	166		
감 사 실	2	2	2						
기 획 예 산 과	1	1	1						
공 보 과	2	2	2						
세 정 과	9	9	9						
일 자 리 정 책 과	2	2	2						
회 계 과	6	6	3	3					
자 치 행 정 과	8	8	8						
사 회 복 지 과	12	12	12						
여 성 가 족 과	53	53	53						
민 원 봉 사 실	12	12	12						
관 광 과	12	12	11	1					
해 양 항 만 과	1	1		1					
환 경 보 호 과	1	1	1						
자 원 순 환 과	167	1	1						166
안 전 총 괄 과	29	29	29						
건 축 행 정 과	2	2	2						
건 설 과	9	1	1				8		
교 통 행 정 과	27	27	1	9	17				
의 회 사 무 국	9	9	9						
보 건 위 생 과	4	4	3	1					
건 강 증 진 과	29	29	29						
하 당 보 건 지 소	29	29	27	1	1				
교 육 체 육 과	2	2	2						
문 화 예 술 과	9	9	7	2					
문 예 시 설 관 리 과	10	10	6	4					
체 육 시 설 관 리 과	11	11		6	5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15	15	10	5					
상 하 수 도 행 정 과	3	3	3						
수 도 과	8	8	1	1	6				
하 수 과	6						6		
남 해 환 경 관 리 과	1	1	1						
북 향 환 경 관 리 과	3	3	1	2					
도 시 재 생 과	1	1	1						
공 원 녹 지 과	15	15	1	1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4	4		4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2. 청원경찰

부 서 별	계	경비,청원경찰	비 고
총 계	22	22	
소 계	6	6	
자 치 행 정 과	4	4	
건 설 과	2	2	
소 계	2	2	
의 회 사 무 국	2	2	
소 계	14	14	
수 도 과	3	3	
문 예 시 설 관 리 과	1	1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3	3	
체 육 시 설 관 리 과	4	4	
환 경 시 설 관 리 사 무 소	3	3	

※ 1. 단순노무

- 행정보조 : 비서, 컴퓨터입력, 전산보조, 보건업무, 행정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에 종사
 - 시설물관리 : 주차장관리, 시설청소 등 단순잡역 종사
 - 현장지도점검 : 주차단속 및 현장업무, 각종 강사, 계량기교체 등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 하수도준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3. 환경미화원 : 청사 및 청사주변 쓰레기수거·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된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1조(휴직) ① (생 략). 1.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 <u>3개월 이내</u> 2. 생략 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u>3개월 이내</u> <u><신 설></u> <u><신 설></u>	제15조의2(정보시스템접근권한 부여) ① 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범위 및 기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조(휴직) ① (생 략). 1.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 <u>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u>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 제56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시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56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장은 제41조 1항 4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1. 공무원근로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소계	행정보조	시설장비유지	현장지도점검					소계	행정보조	시설장비유지	현장지도점검		
계	505	328	245	54	29	14	163	계	519	339	256	54	29	14	166
감사실	2	2	2					감사실	2	2	2				
기획예산과	1	1	1					기획예산과	1	1	1				
공보과	2	2	2					공보과	2	2	2				
세정과	8	8	8					세정과	9	9	9				
일자리정책과	2	2	2					일자리정책과	2	2	2				
회계과	5	5	3	2				회계과	6	6	3	3			
자치행정과	8	8	8					자치행정과	8	8	8				
사회복지과	11	11	11					사회복지과	12	12	12				
여성가족과	53	53	53					여성가족과	53	53	53				
민원봉사실	12	12	12					민원봉사실	12	12	12				
관광과	12	12	11	1				관광과	12	12	11	1			
해양항만과	1	1		1				해양항만과	1	1		1			
환경보호과	1	1	1					환경보호과	1	1	1				
자원순환과	164	1	1				163	자원순환과	167	1	1				166
안전총괄과	29	29	29					안전총괄과	29	29	29				
건축행정과	2	2	2					건축행정과	2	2	2				
건설과	11	3	2		1	8		건설과	9	1	1		0	8	
교통행정과	27	27	1	9	17			교통행정과	27	27	1	9	17		
의회사무국	9	9	9					의회사무국	9	9	9				
보건위생과	4	4	3	1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증진과	29	29	29					건강증진과	29	29	29				
하당보건지소	19	19	17	1	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교육체육과	2	2	2					교육체육과	2	2	2				
문화예술과	9	9	7	2				문화예술과	9	9	7	2			
문예시설관리과	10	10	6	4				문예시설관리과	10	10	6	4			
체육시설관리과	10	10		6	4			체육시설관리과	11	11		6	5		
목포자연사박물관	15	15	10	5				목포자연사박물관	15	15	10	5			
상하수도행정과	3	3	3					상하수도행정과	3	3	3				
수도과	8	8	1	1	6			수도과	8	8	1	1	6		
하수과	6					6		하수과	6					6	
남해환경관리과	1	1	1					남해환경관리과	1	1	1				
북해환경관리과	3	3	1	2				북해환경관리과	3	3	1	2			
도시재생과	1	1	1					도시재생과	1	1	1				
공원녹지과	16	16	1	15				공원녹지과	15	15	1	1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4	4		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4	4		4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비용소요 추계서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2.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 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14	14	30,156,390	422,189,46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가군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0,156,390		
○ 인건비	27,450,840		
- 기본급	16,444,080	1,370,340원*12월	
- 수당	11,006,760		
•상여금	5,481,360	1,370,340원*400%	
•직무수당	1,200,000	100,000원*12월	
•정액급식비	960,000	80,000원*12월	
•교통보조비	600,000	50,000원*12월	
•조정수당	1,200,000	100,000원*12월	
•명절휴가비	822,200	1,370,340원*30%*2회	
•연가보상비	743,200	74,320원*10일	
○ 이전경비	2,705,550		
- 국민건강보험금	826,510	(인건비-정액급식비)*3.12%	
- 장기요양보험금	60,990	(국민건강보험금)*7.38%	
- 국민연금	1,192,080	(인건비-정액급식비)*4.5%	
- 고용보험금	397,360	(인건비-정액급식비)*1.5%	
- 산재보험금	228,610	(인건비-정액급식비)*0.863%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박 경 연

목포시 고시 제2018-5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 4. 30.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30	평화로 124	2018. 04. 30.	건물멸실
31	동명로107번길 18	2018. 04. 30.	건물멸실
32	자유로 81	2018. 04. 30.	건물멸실
33	덧골로33번길 2	2018. 04. 30.	건물멸실
34	복산길 64-1	2018. 04. 30.	건물멸실
35	원형동로 39-2	2018. 04. 30.	건물멸실

시 정 알 림 판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훈련기간 : 2018. 5. 8.(화)~5. 18.(금)[2주간]
※ 국민참여 훈련기간 : 5. 14.(월)~5. 18.(금),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 5. 16.(수) 14:00
- 안전한국훈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응종합훈련
- 훈련주관 : 행정안전부
- 참여기관 : 총 634개 기관 및 일반국민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

안전총괄과 ☎ 061-270-8652

2018.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4. 30.(월)~5. 29.(화)
- 신청대상 :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 결정가격 열람장소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열람' 코너)
- 신청방법 : 목포시청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세정과 ☎ 061-270-8207, 8208

2018 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봄~로맨틱 목포 1987'

“ 멋과 낭만,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에서

영화<1987>속 주인공이 되어 로맨틱한 봄을 만나보세요 ”

- 일 시 : 2018. 4. 28.(토)~5. 13.(일) / 여행주간 내 상시운영
- 장 소 : 목포시 서산동 시화마을 일원 & 연희네 슈퍼

❖ 봄~로맨틱 1987 버스킹 & 프로포즈 이벤트

일시 : 2018. 5. 5.(토) / 5. 12.(토) 14:00~16:00

❖ 연희네 슈퍼 - 영화 1987 명장면과 함께하는 포토존

❖ 다순구미 다방(*다순구미 : 햇별이 잘드는 따스한 마을)

목포만의 특별한 간식 '못난이빵'과 쌍화차 & 커피

❖ 시와 음악이 있는 시화골목 '사랑의 우체통을 찾아라', '사랑의 편지쓰기'



관광과 ☎ 061-270-8431

시 정 알 림 판

목포자연사박물관 상설체험공간 「디스커버리존」 운영

- 운영기간 : 2018. 5월~상시 운영
- 운영장소 : 자연사박물관 1층 4D 입체영상관 옆(50m²)
- 운영대상 : 가족단위 관람객 등
- 운영내용 : 퍼즐맞추기, 위기멸종동물지도완성하기, 색칠하기



자연사박물관 ☎ 061-274-3655

2018년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공매제 안내

- 운영기간 : 2018. 5월~12월
 - 시행목적 :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행정 낭비 초래를 방지하기 위함
 - 대 상 : 자동차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량(이륜자동차 제외)
 - 방 법 : 차량소유자 등의 '동의'를 구한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동의서」를 세정과 차량공매 담당자에게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 ※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인도명령 및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매처분



세정과 ☎ 061-270-8660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신청기간 : 2018. 5. 1.(화)~5. 31.(목)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①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
 - ②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 ③ '17.6.1.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1억4천만(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
- 신청·신고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물 발송)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 신청안내 대상자인 아닌 경우(신청안내물 미발송)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 문의 : ☎ 국번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